

건설법시행령 · 시행규칙 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 : 2007. 9. 5일 ~ 9.27일)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건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5일 입법예고하고 9월 27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본격 개정에 들어가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은 4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내년부터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이 허용됨에 따라 본격화될 교차 진출 때 과거 공사실적의 인정기준이다.

또한 2009년 7월 시행이 예정도니 단순복합공사의 원도급 허용범위와 지난 8월 발표된 건설업 등록 때 기능인력 보유 의무조항 등과 함께 내년에 별도의 입법을 통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부실, 부조리에 대한 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중 기계설비공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여 게재한다.

1.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시행령 제7조, 별표1)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인공지능시스템설치·근거리통신망설비·전산시스템설비·자동원격점검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 EHP)공사, 지열열·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 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

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2.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시행령 부칙 제8조)

- 법률 제8477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이라 함은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2.기계설비공사업을 말한다.

3.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제한 완화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허용 범위를 2억

에서 3억미만으로 확대

4.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시행령 제26조의2)

- 의무가입 보험료를 공무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낙찰률 등에 따른 보험료 확보가 불가능하여,
 - 의무가입보험의 소요비용은 낙찰률과 무관하게 반영하고 납입한보험료를 확인하여 정산
 -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 범위 내에서 하도급자에게 가·감하여 정산

5. 하도급계획의 제출(시행령 제34조의4)

- 공공발주기관의 경우로서 300억원이상의 최저가 대상공사에 대하여 입찰자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
 - 입찰시, 하도급할 전문공사중 주요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의 선정방식, 선정기준을 제출
 - 낙찰이후 30일 이내에 하도급예정대상자, 내역서, 하도급금액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

6.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하도급공사로 확대(시행령 제26조제2항)

- 원도급자만 발주자에게 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원도급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 하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후 30일 이내 하도급공사 정보를 종합정보망에 직접 입력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투명한 하도급관리체계 구축(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 대상 : 4천만원이상의 하도급공사(자재비, 부과세 포함)

7. 공제조합 관련규정 정비(시행령 제56조의2)

-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따라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하여 공제조합의 경쟁력 확보와
 - 부동산개발업,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자산운용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

8. 부실시공, 불법행위 처벌 강화

(시행령 제80조, 별표6)

-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 규정으로 처벌이 경미함에 따라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이상 사망할 경우 6개월 영업정지

9. 퇴직공제 대상공사 확대(시행령 제83조)

- 현행 10억원 이상 공공공사, 300호이상 공동주택 공사는 퇴직공제의무가입 대상이나
 - 공사에정금액이 5억원이상인 공공공사와 2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까지 의무가입 확대

10.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분제도 도입(시행규칙 제28조제3항)

- 발주처에 보증서 사본만 제출하고 보증기간 만료 전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해지하는 문제가 있어
 - 원수급자는 지급보증서부분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증해지를 위해서는 보증서 원본과 부분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원수급인의 임의해지를 방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요약)

구분		현행	개정안	해당조문
건설근로자 등 보호강화	근로자 사회보험 정산제도	보험료 정산제도 없음 * 도급금액산출내 역서 상 보험료 명 시의무만 규정	보험료 별도계 상 (낙찰률 무관) 계상된 금액 미지 출시 차액정산 *도급금액산출내 역서 미기재시 시정명령	시행령 제26조의2
	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제도	(공공) 10억원 이상 공사 (민자사업) 10억 원 이상 (공동주택) 300 세대 이상 (주상복합)대상 아님	(공공) 5억원 이 상 공사 *공기업 자회사 발주 공사도 추가 (민자사업) 5억 원 이상 (공동주택)200 세대 이상 (주상복합)200 세대 이상	시행령 제83조
	공사대장통보제도	원도급업체만 발주자 통보	하도급업체도 발주자 통보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시행령 제26조
하도급 투명성 강화	하도급계획서 제 출제도	계획서 제출제도 없음	(입찰시)하도급 예정공종에 대한 하도급자 선 정방법 등 기재 (낙찰시)하도 급 예정대상 자, 하도급금 액 등 기재	시행령 제26조

구분		현행	개정안	해당조문
하도급 투명성 강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제도	발주처에 보증서 사본 제출	발주처에 보증서 부본 제출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전 산통보 가능	시행규칙 34조의2 시행령 제28조
건설공사 부실 부조리 척결	부실 부조리 처벌	(시공중 부실사고) 근로자만 사망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중 선택 *일반인 피해시 영업정지	(시공중 부실사고) 근로자 5명 이상 사망시 필요적 영업정지 6월	시행령 별표6
		(부실관련 시정명 령 미이행)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중 선택	(부실관련 시정명 령 미이행)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조치 미이행 시 필요적 영 업정지 2월	시행령 별표6
기타 개정사항	건설관련 행정서 류 제출	(하도급 계약 통 보) 문서에 의한 통보 만 가능	(하도급 계약 통보) 하도급공사정 보 망에 하도급계 약 내용 기재시 전자통보 가능	시행령 제32조
		(기성실적 증명서 제출) 문서에 의 한 증명서 제출만 가능	(기성실적 증명서 제출) 공사대장에 건 설공사 기성정보 기재시 증명서 전 자발급 및 통 보 가능	시행규칙 제22조
	건설공제조합 수 익사업	SOC 민자사업 보 증·용자	부동산투자회사, 체육시설, 부동산 개발업, 간접투자 기구 등 투자·출 자 허용	시행령 제56조의 2